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 반덤핑조사 관련 최종덤핑 제목 률 산정내용 및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계획 통보

- 1.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07호, 2024.4.26.) 관련입니다.
- 2. WTO 반덤핑협정 제6.2조, 제6.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잠정)최 종덤핑률 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 (공개본, 비공개본)으로 '25.2.12.(수) 12시까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로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 3. 또한, 상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피요청인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오니 참석여부(대리인 등 참석자명, 연락처 포함)와 발언요지(공개본, 비공개본)를 '25.2.12.(수) 12시까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가. 개최목적 : 덤핑률 산정 관련 의견 진술 및 방어권 보장

나. 일시 및 장소 : '25.2.12.(월) 16:00~, 온라인 회의(접속방법 별도 안내)

붙임: (잠정)최종덤핑률 산정내용 자료 각 1부(별도송부). 끝



수신자 주한 중국대사관,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주한 태국대사관

과학기술서기관 김**학배** 과장

2025. 2. 5.

김민정

협조자

시행 덤핑조사과-97

(2025.02.05)

접수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 http://www.motie.go.kr

전화번호 044-203-5874

팩스번호 044-203-4813

/hbkim@motie.go.kr

/ 비공개(5,7)

Korea Trade Commissio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eceiver: See receiver list

Subject: Notification of Final Dumping Rate Calculation and Plan to Hold a Meeting of Stakeholders Related to Anti-Dumping Investigation on Oriented Polypropylene Film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the Kingdom of Thailand

- 1. This is related to the commencement of a review on the termination of anti-dumping duties on oriented polypropylene film from China, Indonesia, and Thailand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Notification No. 2024-107, 26 April 2024)
- 2. In accordance with Articles 6.2 and 6.9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and Article 64-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the (Provisional) final dumping rate calculation is hereby notified as attached. If you have any opinions on this, please submit them in writing (Public, Private Version) to the Dumping Investigation Division of the Korea Trade Commission by 12.00 pm. Wednesday on February 12, 2025.
- 3. In addition, we plan to hold a meeting of interested parties as follows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regulations. Please submit your attendance (including the names and contact information of attendees such as agents) and summary of speech (Public, Private Version) to the Dumping Investigation Division of Korea Trade Commission by 12:00 pm. on Wednesday, February 12, 2025.

- As Follows -

- A. Purpose of Meeting: To state opinions and guarantee defense rights related to calculating dumping rates
- B. Date and Venue: 16.00 pm. Wednesday on February 12, 2025,
 Online meeting (Connection methods will be announced separately)

Attachment: (Provisional) Final dumping rate calculation contents, 1 Copy

Korea Trade Commission

Receiver: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mbass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Royal Thai Embassy

Date: 5 February 2025

Officer: Kim Hakbae (Deputy Director of Science and Technology)

Division: Dumping Investigation (Letter No. 97)

Tel: 044-203-5874 Fax: 044-203-4813

E-mail: hbkim@motie.go.kr

< 뽀 내 >

가. 에이제이퍼 (A.J.Plast Public Co., Ltd.)

1) 공급자 개요 및 판매 현황

- o (개요) 에이제이피는 태국 방콕(본사)에 소재하고 있으며, '87년 설립되어 OPP(Oriented Polypropylene)필름을 비롯한 CPP(Cast Polypropylene)필름과 OPET(Oriented Polyester)필름 등을 생산하는 업체임
- 재심사대상기간 회사의 총매출액은 xxx천만THB이며, 이 중 재심사대상물품 총매출액(비중) 및 대한국 수출액(비중)은 각각 xxx천만THB (xxx%), xxx천만THB (xxx%)에 해당함
- (생산) 회사의 연간 생산능력은 xxx톤이며, 재심사대상기간 실제 생산량은 xxx톤으로 가동률은 xxx%임
- (판매절차)

2) 조사 경과

- '24. 4. 29. : 재심사 질의서 송부 (기한 : '24.6.10.)
- ㅇ '24. 6. 5. : 피요청인 요청에 따른 담변기한 연장(기한 : '24.6.26.)
- ㅇ '24. 6. 24. : 재심사 답변서 점수
- ㅇ '24. 8. 30. : 보충질의서 송부 (기한 : '24.9.9.)
- ㅇ '24. 9. 6. : 피요청인 요청에 따른 답변기한 연장(기란 : '24.9.20.)
- ㅇ '24. 9. 20. : 보충 담변서 점수
- ㅇ '24. 10. 25. : 온라인 실사 질의서 송부(기란 : '24.11.4)
- ㅇ '24. 11. 4. : 피요청인 요청에 따른 답변기한 연장(기콴 : '24.11.7.)

- ㅇ '24. 11. 7. : 온라인실사 답변서 점수
- ㅇ '24. 11. 12. ~ 11. 13. : 대리인 대면 및 피요청인 온라인실사 실시
- 0 '25. 1. 24. ~ 2. 4. : 실사 결과 통보 및 의견 점수
- o '25. 2.5. ~ 2.12. : (잠정)최종 덤핑률 산정내역 통보 및 의견수렴
- ㅇ '25. 2. 12. : (잠정)최종 덤핑률 산정내역 관련 이해관계인 회의

3) 답변서 검토 및 실사 시 검증사항 등

- 조사실은 피요청인이 제출한 내수 및 대한국 수출판매자료, 원가자료, 경영통계, 조정요소, 내역별 증빙 등을 검토함
- 조사실은 피요청인이 제출한 원답변서, 보충답변서, 실사답변서를 토대로 대리인 및 피요청인 은라인 실사를 실시함
- 피요청인은 실사 전 수정사항으로 보충답변서에서 제출한 CCN 수정사항 등을 제출하였으며 검토결과 물품의 특성과 원기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CCN에 회사의 원가계산 3가지 분류1)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사항을 수용함
- 다만, 피요청인이 실사 준비 과정에서 발견하여 수정요청한 해상보험료 계산오류에 대해서는 덤핑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수용하지 않음
- 판관비와 관련하여 재심사대상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계없는 영업 외수익 등은 제외하였음

4) 자료의 사용

- 조사실은 피요청인이 제출한 원담변서, 실사답변서 및 실사 시 수집 한 각종 증빙자료 등을 검토함
- 정상가격, 덤핑가격, 과세가격 모두 괴요청인이 제출한 담변서 및 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덤핑률을 산정함

5) 물품 구분 기준

- o 조사실은 재심사대상물품의 ①동급(1=Prime, 2=Non-prime), ②두제(10마이크로미터(如)이상), ③금속처리 여부(1 = Metallized, 2 = Non-Metallized), ④코팅처리 여부(1 = Coated, 2 = Non-Coated), ⑤형태(1 = sheet, 2 = roll), ⑥용도·기능(1=Food/Textile Packing, 2=Cigarette Packing, 3=Album/Book Packing, 4=Adhesive Tape, 5=Paper Lamination, 6=Synthetic Paper, 7=Anti-fog, 8=Pearled, 9=Heatsealable, 0=Other)을 CCN(control code number) 분류 기준으로 제시함
- CCN은 재심사대상물품을 구분하는 물리적 특성들로 구성된 코드로서 조사질의서를 통해 피요청인들에게 제공됨
- 고요청인은 재심사 질의서와 함께 제공된 CCN 안내서를 기준으로 개별 거래 건을 구분하여 답변서를 작성하되, CCN 구성방법에 대한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피요청인은 CCN 구성방법에 대하여 보충답변서 제출시 CCN이 조사대상물품의 특성과 원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회사의 원가계산 3가지분류(1. Plain Film, 2 Co-extruder Film, 3. Special Film)를 CCN에 추가하였음,이에 조사실은 이를 기준으로 재심사대상물품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비교함
- * CCN 예시 : Prime동급의 12㎞인 금속·코팅처리 되지 않은 롤형태로 출시되는 음식물 포장용으로서 Special FIIm의 경우, CCN은 11222213

6) 정상가격

- 가) 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토
-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수판매 가격이 통상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및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을 실시함

(1)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 투수관계자에 대한 판매 또는 특수관계자를 통해 판매된 거래 건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검증 불요함
- (2)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
- 원가미만판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모델별로 단위당 순송장가격과 단위당 생산원가의를 비교함
- 원가미만 판매 물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원가미만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고, 20%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함

구분 내수판매물량(A) 판매물량(B) (C=B/A×100) 사용여부 사용여부

²⁾ 제조원기에 합리적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금융비용을 가산한 금액임

나)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3

- 0 심증함 내수판매량이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 피신청인의 므로, 내수판매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함 한 xxx%로 물량 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 충분한 물량이 총 내수판매량(xxx톤)은 대한국 수출량(xxx톤)의 5%를 本型
- 5% 미만인 xxx개 모델에 대해서는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함 다만, CCN별 검증결과 내수판매물량이 없거나 대한국 수출물량의

4 FE 내수판매량(A) 동상의 대한국수출량(B) 비율(C=A/B×100) (단위:kg

→ ₩ 내수판매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F(A) '	
□ 在(C*A/D×10	H 0/0-10

五 구성가격의 산정

- 0 내수판매물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또는 원가미만 판매로 통상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함
- 구성가격은 대한국 수출모델의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함 제조원가에 공급국 내수판매 시 발생한

(단위 : RMB/kg)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생산원가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생산원가 걱정이윤
(A) (B) (C=A+B)	(A) (B) (C∞A+B) (D)
판매관리비 생산원가	·원가 적정이
(B) (C=A+B)	A+B) (D)
생산원가 (C=A+B)	(D) (D)
	<u> </u>

라) 정상가격의 조정

- 0 조사실은 피요청인이 제시한 내륙운임, 신용비용, 포장비를 정상가격 조정 요소로 인정하여 조정함
- (내륙운임) 월별 내륙운임 단위당 내륙운임을 토대로 아오아 보고하였음을 亦 확인하고 해당금액을 心 내수판매물량으로 조정함 배부한
- (신용비용) 실제 대금회수일을 추적하여 신용기간을 산정하였는지 여부 단기차입금 이자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금액을 조정함
- (포장비) 포장타입별 발생총액을 전체 생산물량으로 나누어 포장단가를 산출한 후 건별 물량에 곱하여 보고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을 조정함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THB/kg)

Щ.	보취료 신유비용 보장비	대 하상함	(A)	100
	조정요소 (B)		정상가격	R

⁹ 내수판매달량의 충분성 검증이란 수출가격과 비교되는 내수판매기격이 비교기능한 가격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공급국 내에서 소비용으로 판매되는 동종물품의 판매물량이 충분한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를 통과한 물량에 대해서만 충분성 검증 진행함.

구분 (A) 내륙운임 보험료 신용비용 포장비 (C=A-B)

7) 덤핑가격

가) 덤핑가격의 적용

고요청인은 대한국 수출 시 직접 한국 내 비관계 수입상에 판매하였으므로 실제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함

나) 덤핑가격의 조정

- 조사실은 내륙·해상운임, 물품취급비4, 해상보험료, 은행수수료, 신용비용, 관세환급, 포장비 등을 덤핑가격 조정요소로 인정하여 조정함
- (내륙·해상운임, 해상보험료) 거래건별 실제 발생금액을 추적하여 보고

4) 윤품취급비, 하역 및 기타부대비용

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조정함

- (은행수수료) 대금회수 증빙에 기재된 은행수수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조정함
- (신용비용) 실제 대금회수일을 추적하여 신용기간을 산정하였는지 여부, 단기차입금 이자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 금액을 조정함
- (포장비) 포장타입별 발생총액을 전체 생산물량으로 나누어 포장단기를 산출한 후 건별 물량에 곱하여 보고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을 조정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 THB/kg)

구본 가격 대륙은임 해상 신용 환급 포상비 (C=A-B)

8) 과세가격

0 피요청인은 대한국 수출 시 CIF 조건으로 거래하였는바, 이를 과세가격 으로 적용함

9 최종 덤핑듈

0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5에 따라 산정된 10 최종 덤핑률은 3.49%임 피요정인

<u>6</u> THR/kg

조정된 조정된 덤평차 정상가격 덤평가격 액 (A) (B) (C=A-B)	조정된 덤평차 과세가격 덤평가격 액 (D)	조정된 덤평차 덤평가격 액
(C=A-B)	과세가격 (D)	과세가격 최종덤평활 (D) (E=C/D×100)
		최종덤평曆 (E=C/D×100)

가증평균 덤핑를

3.49%

5 문세법 시행규칙 제17조(덤평방지관세의 부파 등)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덤평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다음 가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덤핑방지관세를 경틀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몰의 범위인에서 결정한 율을 파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OE OE 조정된 점상가격 - 조정된 댐땀가격 보시기대 201 ×

나. 타이원름(Thai Film Industries Public Co., Ltd)

1) 담변서 제출 현황

0 하지 아니함 조사실은 피요청인에 대하여 재심사 질의서를 발송하고 40일 이상의 충분한 회신기간%을 부여하였으나, 피요청인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

79 조사 정과

0 '24. 4 29. : 재심사 질의서 송부 (기한 : '24.6.10.)

0 24. 6 10. : 피요청인 답변서 미제출

0 25 Ņ Ģī \$ Ņ 12. : (잠정)최종 덤핑률 산정내역 中多 黑 의견수렴

0 25. 2 12. : (잠정)최종 덤핑률 산정내역 관련 이해관계인 회의

3) 자료의 사용

0 피요청인은 답변기한 내에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WTO 반덤핑험정 제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함 동 협정 부속서 2,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4 国沿海

- 0 조사실은 담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요청인의 덤핑률 산정을 위해 타이필름의 덤핑률 10.55%를 답변서 미제출 공급자에게 적용함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용가능한 자료로서 원심 조사당시 世요や
- 0 조사실은 원심 조사시, 타이필름에 대해 10.55%의 덤핑률을 산정한 바

6)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함 : 공급자에게 질의서 활송 시 40일 이상의 회신기한을 부여하여야 함

-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WTO 반덤평협정 제6.8조에 따르면 재심사대상공급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최종 판정을 내릴 수 있는바, 피요청인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 가능함
- 한편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WTO 반덤평협정 부속서 2 제1조에 따라 조사실은 40일 이상의 답변기간("24.4.29.~"24.6.10.)을 정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기한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관정을 내릴 수 있다고 통지함
- *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 2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답변과 관련된 사항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WIO 반덤평형정 부속서 2 제7조에 따르면 조사당국이 이용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판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비교점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원심 조사에서 타이필름에게 산정한 덤핑률은 공급자가 직접 제출한 답변서에 기초해 산출된 점, 공급국 현지실사를 통해 검증절차를 거친 점 등에서 WTO반덤핑험정 제6.8조 및 부속서II 제7조의 규정에 부합 하는 '이용 가능한 자료'에 해당함
- 투히, WTO 반덤핑험정 부속서 2 제7조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함조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입수되지 않은 경우,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요청인의 덤핑률은 원심 조사결과 산정된 타이필름의 덤핑률인 10.55%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함

다. 그 밖의 공급자

WTO 반덤평형정 제6.8조 및 등 형정 부속서 I,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피요청인에 대하여 원심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인 10.55%의 덤핑률을 적용함